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2022년 0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택시운송수입이 23% 감소하였으며, 택시기사 1만명이 배달앱, 택배 등 타 산업으로 이직하여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 '22.4월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심야 택시 이용수요가 급증한 반면, 심야시간 택시 공급대수는 '19.4월 동기간 대비 7천여대가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함
- 이에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법인택시 주간조의 야간조 전환, 심야 율배미 버스 확대 및 막차시간 연장, 지하철 막차시간 연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심야 택시 이용수요를 대응하였지만, 여전히 택시 공급은 5천대 가량 부족하여 시민의 택시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덧붙여 '21년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19년 대비 LPG가격 35.7% 증가, 누적 물가가 9.5% 증가하는 등 운송원가 영향요인의 큰 변화가 발생함
-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야 할증 체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심야 택시 이용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금번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참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제3호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 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견청취)

- ① 시장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 첨 :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1부. 끝.

별 첨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 8. 26

도 시 교 통 실
(택시정책과)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일상회복 조치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심야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고, 연말연시 예상되는 택시 승차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요금제 등 합리적으로 택시요금을 조정코자 함

I

추진 개요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추진 경위

- '21.4 ~ 12월 :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용역(서울연구원)
- '21. 8.23 / 11.26 : 택시업계 택시요금 인상 건의(→서울시)
 - 택시 기본요금 인상, 할증 시간 및 할증율 등 확대 건의
- '22. 4. 20 ~ : 일상회복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정책 시행 중
 - 개인택시 한시 부제해제 시행 : 21시~04시, 1,053대 공급
 - 심야 전용택시 확대 : 당초 2,300대 → 현재 5,648대
 - 법인택시 야간조 전환 : 당초 7,051대 → 현재 7,699대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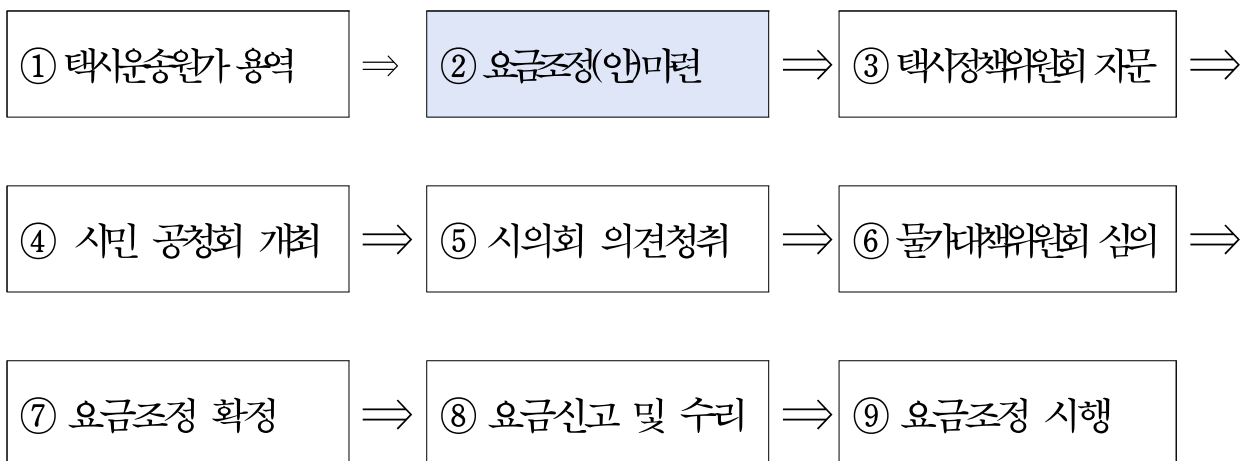
- 중형·모범·대형·고급택시가 운영 중이며, 중형·모범·대형승용이 조정대상임

〈'22.7월말 기준〉

구 분		합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영기준	조정대상
면허 대수	합 계	71,758대	49,155대	22,603대	-	-
	중 형	67,764대	46,166대	21,598대	인가요금	○
	모 범	865대	865대	-		○
	대형승용	154대	129대	25대		○
	대형승합	1,085대	267대	818대	자율요금	X
	고 급	1,890대	1,728대	162대		X
종사자수		70,023명	49,155명	20,868명	-	-

요금조정 절차

-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요금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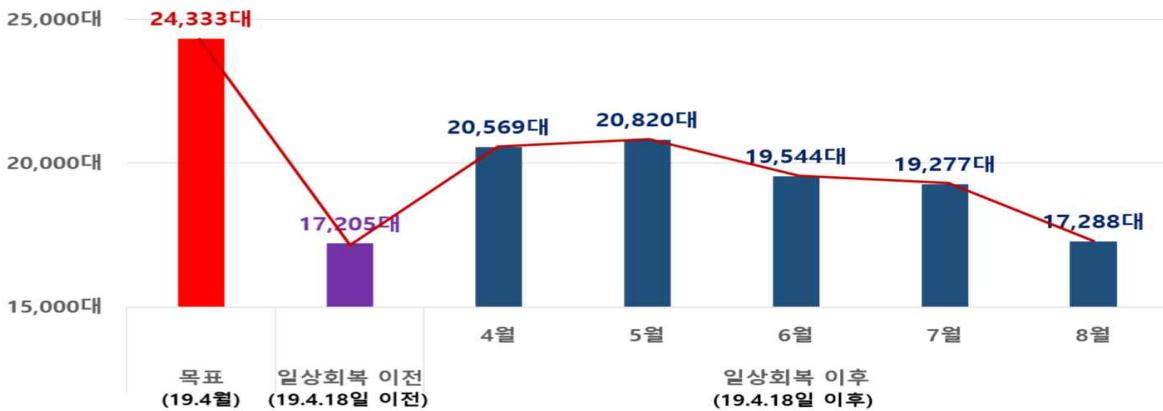


II

요금조정 필요성

□ 심야 수요탄력도에 따른 요금 조정

- 일상회복 후 심야택시 수요 급증에 따라 부제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확대 중이나 코로나 이전('19년) 2만4천대 대비 4~5천대 부족
 - [법인택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평균 영업수입 23% 감소 및 택시기사 배달앱·택배 등 이직으로 심야 운행 택시기사 부족 심화
 - [개인택시] 고령화(65세 이상 약 52%, 80세 이상 603명) 및 야간 운행기피로 심야 택시공급 확대에 한계 봉착



□ 택시 운영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개선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및 4~5년 주기 요금조정 시기 도래
 - 평시('19년) 대비 '22.5월 평균 영업수입 9.5%, 영업건수 20.5% 감소
 - 과거 요금 조정내역

구 분	'05년	'09년	'13년	'19년
요금인상율	17.5%	12.6%	10.9%	18.6%
기본요금(2km)	1,900원(300원↑)	2,400원(500원↑)	3,000원(600원↑)	3,800원(800원↑)
거리요금(100원)	144m(24m↓)	144m(-)	142m(2m↓)	132m(10m↓)
시간요금(100원)	35초(6초↓)	35초(-)	35초(-)	31초(4초↓)

- 물가 상승, LPG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
 - 물가상승률('19년 대비 9.5%↑) 및 LPG 가격 변화('19년 대비 리터당 35.7%↑)



- 경영여건 분석 결과, 1대당 운송수지는 66,879원 적자(19.3% 인상요인)
 - ['21년 택시운송원가 분석 주요 결과]

구 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수지	인상요인율
1일 대당(VAT 제외)	342,695원	409,574원	-66,879원	19.3%

- 수입자료 : 택시회사 전체 수입자료 ('19 ~ '21.10)
- 원가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결산서, 임금협정서 등
 - ※ 2인 1차 기준(1대당 21시간 이상 대상)으로 택시 원가 및 수입 분석
 - ※ 수입 : '19년 실적 적용(코로나 회복 가정)
 - ※ 비용 : '20년 실적원가에 물가, LPG 연료비,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심야 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물가유가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기본요금 조정」 필요

Ⅲ

요금조정 계획(안)

〈 추진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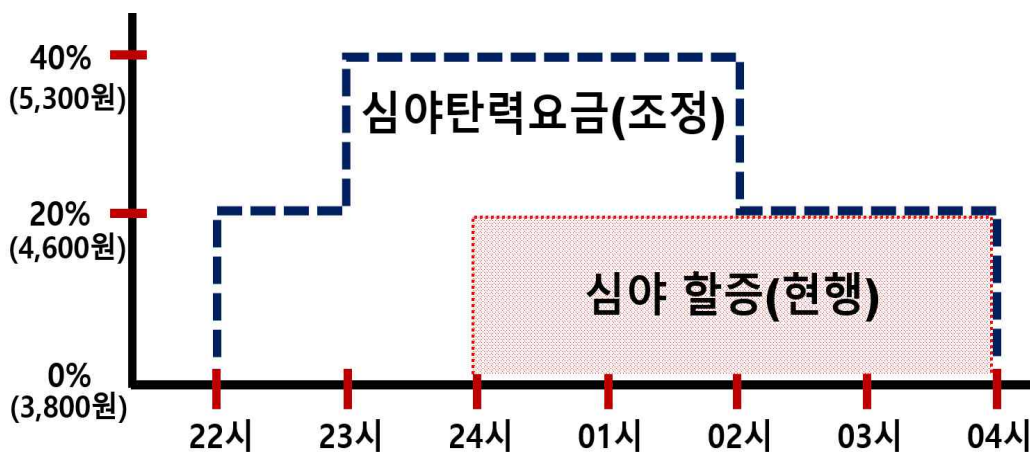
- ◆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유형별 심야 할증시간 확대 및 탄력적 할증 적용
-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한 기본요금 중심 조정
- ◆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조정 시행

① 택시 유형별 조정 계획

1. 중형택시 : 19.3% ↑ (심야 탄력요금제 5.2% + 택시 기본요금 등 14.1%)

□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 5.2% ↑

- 현 행 : 24~04시, 20% 할증, '82년 이후 전국 동일 적용
- 조 정 : (시간) 24→22시 심야 2시간 확대, (할증률) 20%→20~40%



※ 해외사례 : 뉴욕(20~06시, 0.5\$ 추가), 런던(22~05시, 30%), 도쿄(22~05시, 20%)

- 적용대상 : 중형택시(서울시 전체 71,764대 중 70,881대)
- 적용방법 : 앵미터기 장착

□ **택시 기본요금 등 조정 : 14.1% ↑**

- 현 행 : 기본요금 3,800원/2km, 132m 및 31초당 100원 등
- 조 정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차원으로 기본요금 위주 요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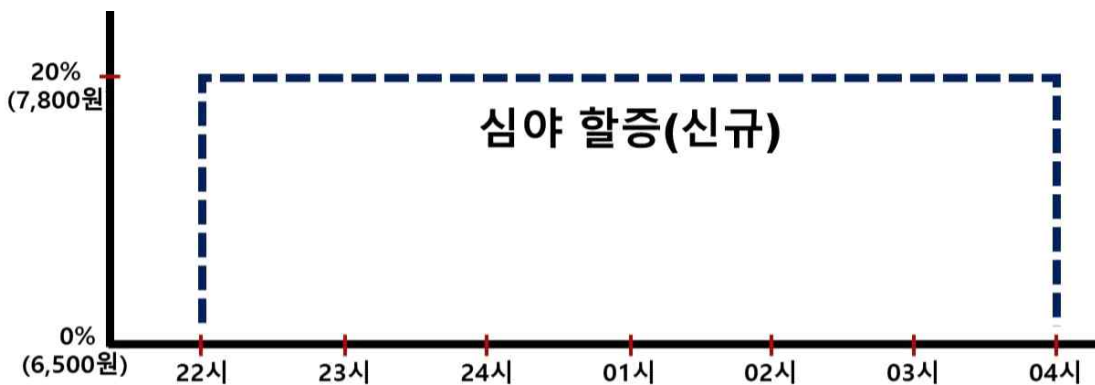
구 분	현 행	조 정(안)
기본요금	3,800원	4,800원(1,000원 ↑)
기본거리	2,000m	1,600m(400m ↓)
거리요금	132m 100원	131m(1m ↓) 100원
시간요금	31초 100원	30초(1초 ↓) 100원
시계외 할증	시계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	현행 유지

※ 심야 탄력요금제와 시계외 할증 중복 적용 가능

2. 모범·대형(승용)택시 : 11.6% ↑ (심야할증 8.0% + 택시 기본요금 등 3.6%)

□ **심야 할증 신규 도입 : 8.0% ↑**

- 현 행 : 심야 및 시계외할증 없음
- 조 정 : (시간) 미적용 → 22~04시, (할증율) 미적용 → **20%**



- 적용대상 : **모범·대형(승용)택시(서울시 전체 71,764대 중 1,015대)**
- 적용방법 : 앱미터기 장착

□ 택시 기본요금 등 조정 : 3.6% ↑

- 현 행 : 기본요금 6,500원/3km, 151m 및 36초당 200원 등
- 조 정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차원으로 기본요금 위주 요금 조정

구 분	현 행	조정(안)
기본요금	6,500원	7,000원(500원↑)
기본거리	3,000m	3,000m(-)
거리요금	151m당 200원	151m당 200원(-)
시간요금	36초당 200원	36초당 200원(-)
시계외 할증	미적용	시계외 할증 20% 신규도입 ※ 시계를 벗어나는 지역부터 적용

※ 심야 탄력요금제와 시계외 할증 중복 적용 가능

3. 외국인관광택시

- 현 행 : 미터요금, 구간요금, 대절요금으로 구성
 - 미터 요금 : 중형, 모범·대형(승용) 미터요금의 20% 추가 할증 적용
 - 구간 요금 : 인천공항 ↔ 서울지역 운행시는 정해진 구간요금 적용
 - 대절 요금 : 외국인 관광 등의 목적시 3~24시간 대절 요금 적용
- 조 정 : 구간 및 대절요금만 조정(0.5 ~ 1.0만원 인상)

현 행

구 분		요금 부과 기준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구간 요금	A지역 (평균 50km)	강서	65,000원	95,000원
	B지역 (평균 60km)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70,000원	100,000원
	C지역 (평균 65km)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구, 종로	80,000원	110,000원
	D지역 (평균 70km)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85,000원	120,000원
	E지역 (70km 이상)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90,000원	130,000원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24시간
대절 요금	중형	60,000원	100,000원	150,000원	180,000원	230,000원
	대형·모범	80,000원	120,000원	170,000원	200,000원	250,000원

조 정 안

구 분		요 금 부 과 기 준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구간 요금	A지역 (평균 50km)	강서	70,000원	100,000원
	B지역 (평균 60km)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75,000원	110,000원
	C지역 (평균 65km)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구, 종로	85,000원	120,000원
	D지역 (평균 70km)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90,000원	130,000원
	E지역 (70km 이상)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95,000원	140,000원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24시간
대 절 요 금	중 형	70,000원	110,000원	160,000원	190,000원	240,000원
	대형·모범	90,000원	130,000원	180,000원	210,000원	260,000원

2 기타 부가요금

- **호출료** : '21.4월 플랫폼중개요금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일원화를 위해 플랫폼 호출료 기준을 우리시 기준에서 삭제
 - 다만, 전화호출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시도지사 호출료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호출료는 전화호출료만 운영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함

구 분	현 행		조 정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주간(심야할증 비적용 시간)	1,000원	2,000원	1,000원	삭 제
야간(심야할증 시간)	2,000원	3,000원	2,000원	

- **통행료** :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승객이 실비 부담

3 택시요금 단계별 시행 계획

-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을 대비하면서 시민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요금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

구 분	1단계 (’22.12월 초)	2단계 (’23.2월 중)
중형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요금, 거리 및 시간요금 조정
모범·대형(승용)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시계의 할증 도입	기본요금 조정
외국인관광택시	-	구간, 대절요금 조정
기타 부가요금	플랫폼 호출료 삭제	-

VI 택시요금조정 효과

승객 이용 부담

구 분		시민 1인당 부담 증가액	
		낮 시간(04~22)	심야 시간(22~04)
1단계 조정시	중형	-	1,707원
	모범·대형	-	3,425원
2단계 조정시 (1단계 포함)	중형	1,395원	3,514원
	모범·대형	500원	4,025원

택시 수입 증가

구 분		택시 1대당 수입 증대	
		낮 시간 (6시간 운행기준)	심야 시간 (6시간 운행기준)
1단계 조정시	중형	-	21천원
	모범·대형	-	40천원
2단계 조정시 (1단계 미포함)	중형	17천원	43천원
	모범·대형	4천원	47천원

V

추진 일정

-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 : '22. 08. 31(수)
- 시민공청회 개최 : '22. 09. 05(월)
- 시의회 의견청취 : '22. 09월 중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22. 10월 중
- 심야 탄력요금 조정(1단계) : '22. 12월 초
- 기본요금 등 택시요금 조정(2단계) : '23. 02월 중

첨부 1

타시도 지역별 택시요금 현황

지 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이하 주행시100원)	심야(0~4시) 및 사업구역외운행	시행일자 및 이전대비 인상율	
서울	3,800원	132m당	3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19.02.16	18.6% 인상
부산	3,800원	141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21.12.05	10km5.36% 20km2.96%
대구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18.11.01	14.1% 인상
인천	3,800원	135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9.03.09	17.8% 인상
광주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5%	'19.01.10	13.9% 인상
대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9.01.01	17.9% 인상
울산	3,300원	125m당	30초당	"	'19.01.01	13.4% 인상
경기	3,800원	132m당	3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19.05.04	20.1% 인상
강원	3,300원	133m당	33초당	"	'19.04.19	16.7% 인상
충북	3,300원	137m당	34초당	"	'19.03.23	13.2% 인상
충남	3,300원	131m당	37초당	"	'19.06.01	17.1% 인상
전북	3,300원	147m당	33초당	"	'19.05.01	14.5% 인상
전남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5%	'19.04.01	15.5% 인상
경북	3,300원	134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19.03.01	12.5% 인상
경남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9.04.11	14.6% 인상
제주	3,300원	126m당	3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9.07.15	16.3% 인상

첨부 2

국외 심야할증 현황

□ **국내외 심야할증 현황** (24~04시, 기본 및 주행요금 20%↑)

- (국내) '82년 통금해제로 심야승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도입(중형기준)
- (해외) 대부분의 도시에서 우리시보다 심야할증시간 폭이 넓고, 할증률 높음

구 분	서울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싱가포르
할증시간대	24~04	20~06	22~05	22~05	19~07	24~06
할증률	20%	0.5\$ 추가	30%	20%	27%	50%

분석 기준

○ 분석 자료 : 법인택시회사 경영 및 운행 자료('19~'20년)

- 경영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결산서, 임금협정서
- 수입자료 : 운송수입자료 ('19 ~ '21.10)

○ 분석 내용

- '19년 요금조정 당시 택시운송원가 항목을 기준으로 택시 실적원가 분석
- 택시 실적원가 분석을 기준으로 '21년 이후 택시 표준운송원가 분석
- 2인 1차 기준(1대당 21시간 이상 대상)으로 택시 운송수입 분석

분석결과

○ 택시업종에 맞는 표준운송원가 항목 설정 및 분석

- 택시업종의 운송원가를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12개 요소로 세분화

항 목	항목별 요소
1. 가동비	① 운전직인건비 ② 연료비 ③ 타이어비
2. 보유비	④ 정비직 인건비 ⑤ 관리직인건비 ⑥ 정비비 ⑦ 감가상각비 ⑧ 차량보험료 ⑨ 차고자비 ⑩ 기타차량유지비 ⑪ 기타관리비
3. 이윤	⑫ 적정이윤

○ 요금산정 기준원가 및 운송수입 분석 : 66,579원/일 적자

※ VAT 제외

구 분	운송수입 ①	운송원가 ②	운송수지 ③ = ① - ②	인상요인율 ③ / ①
대당 / 일	342,695원	409,574원	-66,579원	19.3%

- 1대당 택시운송원가 세부내용

구 분		'21년 기준운송원가	비 율	
운송원가 합계(D=A+B+C)		409,574원	100.0%	
가동비 (A)	소 계	319,365원	78.0%	
	운전직 인건비	고정급	164,865원	40.3%
		초과급	58,803원	14.4%
	연료비	45,257원	11.0%	
	타이어비	1,553원	0.4%	
보유비 (B)	소 계	90,200원	22.0%	
	정 비 직 인 건 비	5,376원	1.3%	
	관 리 직 인 건 비	16,643원	4.1%	
	정 비 비	8,170원	2.0%	
	감 가 상 각 비	9,291원	2.3%	
	차 고 지 비	10,802원	2.6%	
	기 타	4,510원	1.1%	
적정이윤(C)		6,929원	1.7%	

첨부 4

최근 타 시도 요금조정 사례

시도	요금조정 내용
경기도, 인천시	2,400원 → 3,000원('13년) → 3,800원('19년)
부산시	2,800원 → 3,300원(17년) → 3,800원('21년)
세종시	2,800원(13년) → 3,300원('22년)
강원도	2,800원 → 3,300원(19년) → 3,800원('22년)

첨부 5

택시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 **0.0695%**

- 12개 분류 458개 대표품목 중 택시 비중 1,000점 중 **3.6점**

요금인상률	비교시점 품목지수	기준시점 품목지수	품 목 가중치	기 여 도
19.30%	1.1930	1.000	3.1	0.0695%

계산방법

- 개별품고의 변동이 물가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

$$\begin{aligned}
 \text{물가영향도} &= \frac{\text{비교시점 품목지수} - \text{기준시점 품목지수}}{\text{기준시점 총지수}} \times \frac{\text{품목 가중치}}{\text{전체가중치}} \times 100 \\
 &= \frac{(1.193 - 1)}{100} \times \frac{3.6}{1,000} \times 100 = \mathbf{0.0695\%}
 \end{aligned}$$